

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접수 세부사항

2014. 4. /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담당 보수팀



주요 내용

- ·배경: 법정사유로 인한 긴급자금 필요한 직원에 대한 자금 여력 확대
- · 대상 : 법정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직원
 - ※ 단, 연대보증을 통해 회사(기금)대부금을 받은 직원은 보증보험 대체 또는 전액 상환 시 가능
- ㆍ신청 type : DC형/혼합형 중 한가지 선택
 - D C 형 : 전환일 기준 전후 적립금 모두 DC형으로 운용
 - 혼합형: 전환일 기준 이전 적립금 DC형 + 이후 적립금 DB형 운용
 - ※ 전환기준일 2013.12.31
- · 관련 법규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
 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 -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하는 요하는 경우
 -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
 -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· 중도인출금액: 2013.12.31 기준 퇴직금 전액(사외예치액+사내유보액)



주요 내용

ㆍ주요 일정

- 중도인출 시행 공지 : 4.10

금융기관별 중도인출 신청 접수 : 4.10 ~ 4.17

- DC 전환 금액 확정 및 DB상품 해지 : 5.2

- DC전환일 : 5.7(예정)

※ 중도인출 가능일은 DC전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상 소요되므로 신청 금융기관에 일정확인 필요

· 대상 금융기관(총 20개 기관)

■ 생명보험: 삼성, 교보, 한화, IBK연금보험, 미래에셋, 신한

■ 손해보험: 삼성, LIG

■ 증 권: 미래에셋, 삼성, 신한, 하나대투, 현대, 대신

■ 은 행: 기업, 신한*, 국민, 외환, 농협, 산업

※ 신한은행* 퇴직연금 담보대출자는 신한은행만 선택 가능



중도인출 사유별 제출서류

· 공통서류 : 퇴직연금제 전환신청서(Type 선택) DC가입신청서, 중도인출신청서(금융기관별 접수시 작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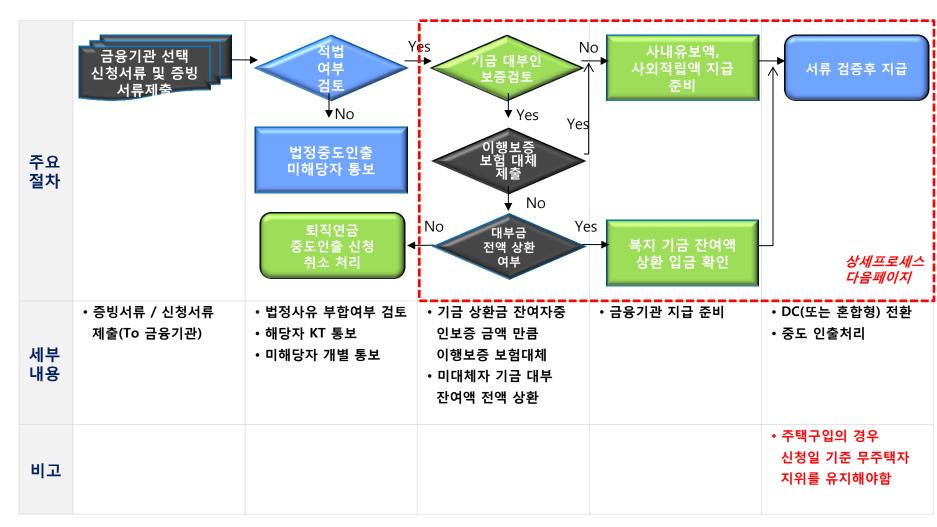
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	증빙서류	발급처	
	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구입하는 경우	· 세목별과세(납세)증명서	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민원24)	
		·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	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민원24)	
		·매입 주택의 등기부등본	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민원24)	
		무주택서약서	가입 금융기관	
		·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	병원	
711	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	·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	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민원24)	
	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	· 법원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 (최근 5년 이내)	법원	
	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	· 법원파산선고문 (최근 5년 이내)	법원	
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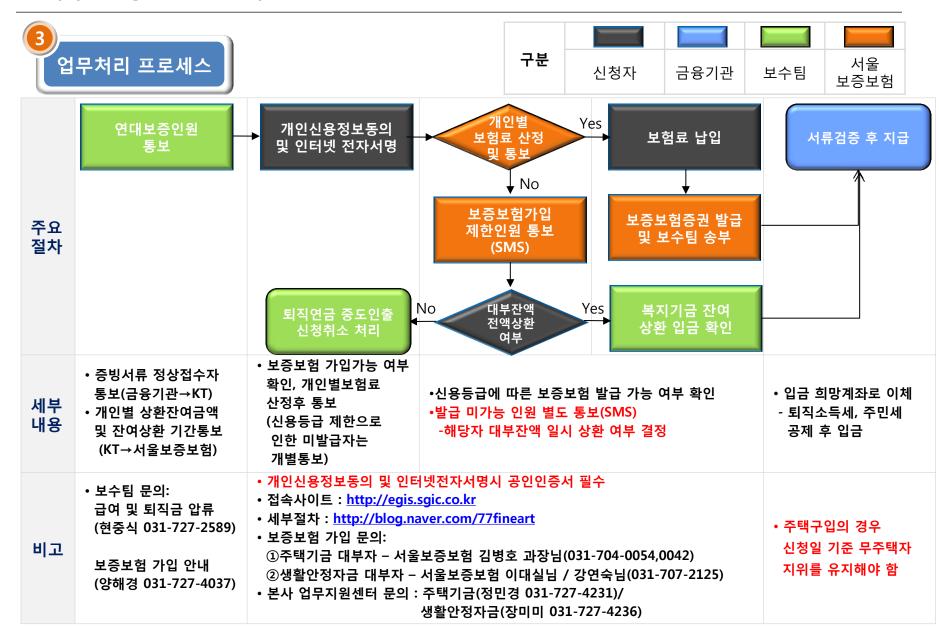
※ 주택구입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로 무주택자임이 불확실할 경우, 추가로 요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확인

20140408_경영지원담당 보수팀 _ 이상문











연대보증인 대체 프로세스

· 보증보험 가입 또는 <mark>일시상환</mark>하는 방법이 있음

구 분	세부사항	
보증보험 가입	① 보증보험 가입 메뉴얼 안내 사이트 접속: http://blog.naver.com/77fineart ② KT직원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처리: "KT직원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 "매뉴얼 참조 ③ "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" 완료 메시지로 바뀌면 완료된 것이며, 다음 진행은 하지 마시고 서울보증보험 김병호 과장(010-3351-1014)로 "성명, 주민번호, 동의완료"내용으로 문자 발송 ④ 문자 발송 익일 오후에 처리결과를 서울보증보험 김병호 과장이 개별 휴대폰으로 문자통보 ⑤ 문자통보를 받으신 분은 가입 매뉴얼 안내 사이트 접속: http://blog.naver.com/77fineart ⑥ "KT직원 전자서명" 매뉴얼 참조하여 "전자서명 및 보험료 송금"처리 - 보험료는 "전자서명" 진행 중에 나오는 금액 확인하여 보험료 송금계좌로 금액 이체 - 보험료송금계좌: 신한은행 325-81-60532819 예금주 서울보증보험 ⑦ 전자서명 및 송금완료 후 서울보증보험 김병호 과장(010-3351-1014)에게 "전자서명 및 송금완료" 내용으로 문자 발송 - 익일 오후에 처리결과 사이트에서 확인가능	
문의처	① 보증보험 가입 문의 : 서울보증보험 김병호 과장(☎ 010-3351-1014, 031-702-0042) ② 보증보험 가입 절차 안내 : 분당 업무지원센터 정민경 031-727-4231 / 장미미 031-727-4236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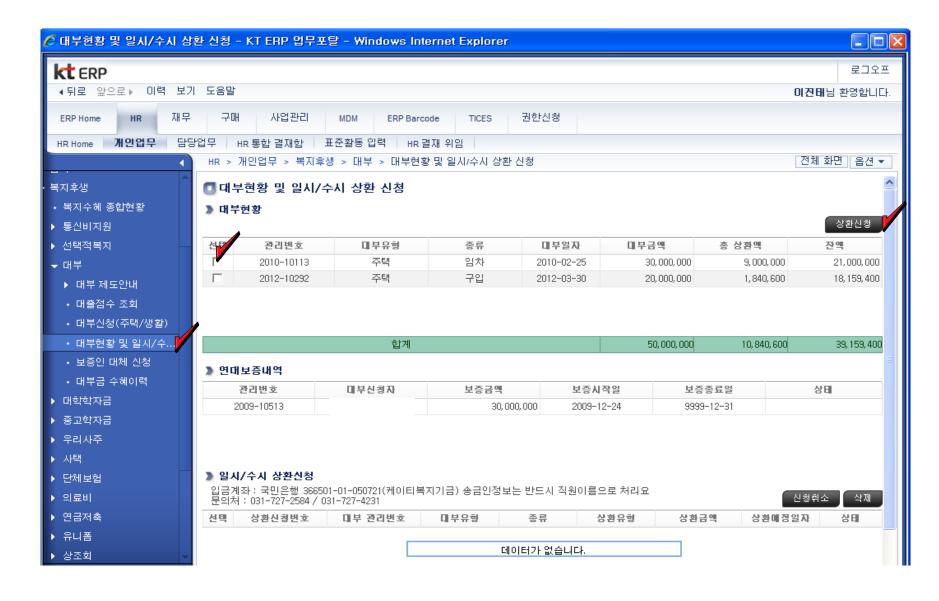


연대보증인 대체 프로세스

· 보증보험 가입 또는 일시상환하는 방법이 있음

구 분	세부사항
일시상환	① 신청기간: 수시/일시상환은 매월 1~10일, 25일~말일 신청/상환가능 ② BIT-ERP > HR > 개인업무 > 복지후생 > 대부 > 대부현황 및 일시/수시 상환 신청 ③ 입금처리: 국민은행 366501-01-050721 (예금주 - 케이티복지기금) 직원이름으로 송금 ④ 상환금액: 원금 + 이자(상환일자에 따라 이자가 변동됨) ⑤ 상환금액 송금 익일 상환여부를 BIT-ERP > > 대부현황에서 확인가능
문의처	분당 업무지원센터 : 정수경 031-727-4231 / 장미미 031-727-4236

※ 기금 대부금에 대한 보증보험 또는 연대보증여부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, "BIT-ERP > HR > 개인업무 > 대부 > 대부신청(주택/생활) > 담보제출" 메뉴에서 대부금별 확인 가능





주의사항 및 향후계획

- ·주의사항
 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,
 반드시 중도인출 인출 시점에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여야 함.
 -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,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반드시 '향후 6개월 이상'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함 (고용노동부 행정지침)
 - 확정급여형(DB)에서 확정기여형(DC) 및 혼합형(DC+DB)전환은 가능하나, DC형 및 혼합형에서 DB형으로 전환 불가
 - 원리금 보장상품의 수익률은 매월15일에 공시되어 15일간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계약수익률을 확인해야 함
 - 증빙서류는 중도인출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발급 또는 작성분만 인정
 - 혼합형(DB+DC)은 DC형 전환분만 중도인출가능(DB형 운용분은 DC형 전환 후 중도인출 가능)
 - 신한은행 퇴직연금 담보대출자는 신한은행 DC형 상품으로 전환 후 인출 가능
- ·향후계획
 - DC형 전환 접수 : 연 2회(매년 1, 7월)
 - 법정중도인출 사유자 추가 신청 : 연 2회(매년 4, 10월)

End